수감자에게 비자발적 강제 노동을 허용하는 헌법상 조항을 삭제합니다. 입법부 헌법 수정.

공식 제목 및 요약 법무부 장관 작성

이 법률 개정안의 전문은 96페이지와 국무장관 웹사이트 voterguide.sos.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도소 및 감옥에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비자발적인 강제 노동을 시행 (즉, 수감자에게 노동을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재 California 헌법 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합니다
- 수감자가 업무 배정을 거부했을 경우 California 교정재활부가 처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감자가 형벌을 감면 받는 대신 자발적으로 업무 배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치 요약:

 주 감옥 및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규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형사 사법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ACA 8(법률 개정안 6)에 대한 입법부의 최종 투표 결과

(2024년 법령 챕터 133) 상원: 찬성 33 반대 3

주 하원: 찬성 68 반대 0

입법 분석가의 분석

배경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노역"이 금지됩니다. California 주 헌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노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비자발적 노역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노역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립 교도소 및 카운티 교도소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수업 수강과 같은 다른 활동들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는 요리, 청소 또는 교도소 및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작업과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수감자의 약 3분의 1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간당 1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역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시간 크레딧"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나 다른 활동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기적인 전화 통화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법 분석가의 분석 계속하기

제안

범죄에 대한 처벌로 비자발적 노역을 금지합니다. 법률 개정안 6은 헌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비자발적 노역을 금지합니다. 또한 주립 교도소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 6은 교도소가 사람들에게 근로 시간 인정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주 및 지역 형사 사법 비용의 잠재적 증가 또는 감소. 법률 개정안 6이 주 및 지방형사 사법 비용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불확실합니다. 법률 개정안 6이 주 교도소및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의 업무 관련규정을 어떻게 바꾸고 사람들이 이러한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나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거부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교도소나구치소에서는 노동을 장려할다른 방법을 찾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인상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대신 더 많은 시간 인정 점수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더 적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주 및 지방 형사 사법 비용의 잠재적 증가 또는 감소는 매년 수천만 달러(연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전체 일반 기금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기금은 주 정부가 교육, 의료, 교도소 등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 목록을 보려면 sos.ca.gov/ campaign-lobbying/cal-access-resources/ measure-contributions/2024-ballot-measurecontribution-totals를 방문하세요.

위원회의 상위 10대 기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ppc.ca.gov/transparency/ top-contributor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